

2020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위원정수	재적위원	참석위원
7	7	4

I. 개최일 및 장소: 2021. 02. 09.(화) 13:00, 502호 강의실

참석위원: (교직원) 정영준, 윤혜진, (법인) 방진희, (학생) 황제만
 불참위원: (학생) 김종우, 황선정, (전문) 임경자

II. 개최 선언 : 재적위원 7명 중 4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

III. 심의 안건

제1호 :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잉여금 처리원칙(안)

IV. 회의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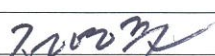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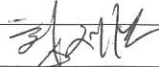
- 정영준 위원장 : 제1호 안건인 “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잉여금 처리원칙(안)” 심의 건을 상정한 후, 소관 부서인 사무처장으로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회의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하다. (회의자료 제1호 안건)

<잉여금 처리 원칙 및 집행>

- 잉여금이란 2020회계연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과 2021회계연도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의 차이를 뜻함
 ※ 예시: 2020회계연도 결산 차기이월자금(100)-2021회계연도 본예산 전기이월자금(50) = 잉여금(50)
- 2020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집행 후 사업 집행 잔액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(2021회계연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월자금)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방안 마련해야 함
- 2020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잉여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

<잉여금 처리원칙(안)>

-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·사고 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해당 이월 사유에 따라 2021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, 기타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교육환경개선, 장학금 등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함

대표 간서명	정영준 	윤혜진 	황제만 
--------	---	--	---

- 정영준 위원장 : 안건 설명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다.
- 황제만 위원 :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(안)을 검토한 결과 우리 대학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결정되었기에 원안대로 심의할 것을 제안하다.
- 윤혜진 위원 : 황제만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다.
- 방진희 위원 : 윤혜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.
- 정영준 위원장 :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잉여금 처리원칙(안) 심의에 대하여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, 전체 위원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다고 하여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언하다.
(찬성 4명: 정영준, 윤혜진, 방진희, 황제만, 반대 0명)

V. 폐 회

- 위원장이 참석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회의록에 간서명할 위원으로 정영준 위원장, 윤혜진 위원, 황제만 위원이 선정되었음을 선언하고, 2020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

붙임 : 2020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1부.

2021년 02월 09일

위원장	정영준	<u>정영준</u>
위원	윤혜진	<u>윤혜진</u>
위원	방진희	<u>방진희</u>
위원	황제만	<u>황제만</u>

(붙임자료)

2020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

□ 일시 및 장소 : 2021.02.09.(화) 13:00 ~
502호 강의실

□ 심의 안건

제1호 :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잉여금 처리원칙(안)

[제1호 안전]

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잉여금 처리원칙(안)

□ 잉여금 처리 원칙 수립 및 집행

- 잉여금이란 2020회계연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과 2021회계연도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의 차이를 뜻함

※ 예시: 2020회계연도 결산 차기이월자금(100) - 2021회계연도 본예산 전기이월자금(50) = 잉여금(50)

- 2020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집행 후 사업 집행 잔액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(2021회계연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월자금)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방안 마련해야 함

※ 예시: 등록금회계의 잉여금을 직접교육비로 활용, 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인하 부문에 사용 등

⇒ 잉여금은 본예산 수립 시 매년 검토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심의·의결하여야 하며, 별도 안전으로 상정되어야 함

- 2020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잉여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

□ 잉여금 처리 원칙(안)

-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결산 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·사고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해당 이월 사유에 따라 2021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, 기타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교육환경개선, 장학금 등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함

※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본예산 상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예산계상액 : 없음(0)